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7. 21.

교육사회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7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 7. 14 제2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수정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종근 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감사원 등에서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등 권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안)' 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학교설립예정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학교의 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심의사항을 추가 함.(안 제3조)
- '위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 함.(안 제6조)
- '위원의 의무'에 회의참여, 정보누설 금지, 지위의 남용과 재산상의 권리, 이익 취득 및 알선 금지를 정함.(안 제7조)
- '위원의 자격상실'을 의무 미이행, 공무원 위원회의 그 직위 상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신분 상실, 연속 3회 이상 회의 불참 시로 정함.(안 제8조)
- '회의록'에 개최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과 대표위원의 서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위원들의 주요 발언요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 하도록 정함.(안 제11조)

Ⅲ.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

-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 교육과학기술부(前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2008년 2월 5일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안)을 각 시·도별 교육청에 시달하면서 현행 조문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준칙안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동기>

○ 국무조정실에서 시·도별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 운영중인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 하라는 요구가 있었음.

○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시·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

⇒ 교육과학기술부(前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준칙(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622(2008.2.5)

○ 다만, 제6조에서 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적용과 관련, 법률적 하자는 없지만 충청북도교육청을 감안하면, 「지방공무원법」으로 적용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6조 제1항에서 위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교육청은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공무원법보다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함이 타당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주요내용

- 안 제6조(위원의 자격)제1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로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8. 7. 14.

제안자 : 김광수의원 외

수정이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 제6조(위원의 자격)제1항 중 위원의 자격이 "국가공무원법"으로 명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점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법"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1. 안 제6조 제1항의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에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로 수정함.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설></p>	<p><u>제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u>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 여야 한다.</p>	<p><u>제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u>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공 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 니하여야 한다.</p>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정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와 시설의 해제에 대한 사항
2. 학교설립예정지 선정 시 주변지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
3.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
4.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
5. 기타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3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정화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장의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이고 위원정수의 최소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와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정화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화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6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7조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소속직원과 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에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

3.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할 경우 보궐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정화위원회 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정화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장이 민원인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와

시설해제 신청이 있어 심의(이하 "해제심의"라 한다)를 의뢰하는 경우

2. 교육장이 학교설립예정지 선정과 관련한 주변지역의 학습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3. 교육장이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4. 교육장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제심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정화구역 관리자인 학교장의 의견서
 2. 민원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사항
 3. 신청지 주변에 대한 심의사례 등
- ④위원장은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교육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통보한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및 대표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4. 위원들의 발언내용 주요 요지 등

제12조(간사와 서기) 정화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사무에 따라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무자,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정화위원회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정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취

□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15. (생략)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은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

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의 임기 그 밖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 및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한다.

1. 교습과정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2.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3. 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4. 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용변인 학원
5. 독서실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를 갖춘영업소를 말한다.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및 제2항”으로 본다.